

하남시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824
----------	------

발의연월일 : 2024년 2월 2일

발의자 : 정병용 의원

1. 제안이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남시 내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남시민의 안전한 체육 환경 조성 및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 나.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 다. 체육시설 안전점검(안 제5조)
- 라.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안 제6조)
- 마. 법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제정조례안 : 덧붙임
- 나.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다.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라. 기타사항 : 덧붙임
- 마. 입법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24. 2. 8. ~ 2. 13.

○ 의견 내용 : 입법예고 중

바. 부서의견(체육진흥과) : 특이사항 없음

하남시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남시 내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남시민의 안전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여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내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체육시설 안전점검 계획

3.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예방 교육·홍보
4.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안전점검) ① 시장은 법 제4조의4 및 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법 제4조의5 및 법 시행령 제2조의6에 따라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체육시설의 소유자(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를 포함)와 체육시설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6조(사업)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실태조사
2.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3.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
4.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안내 등 홍보
5.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
6. 그 밖에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체육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육시설 안전관리 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예산 등을 지원하는 경우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9. 18., 2020. 5. 19., 2021. 4. 13., 2022. 1. 18.>

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4조의4(체육시설 안전점검 등의 위임·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립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1.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2.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
3.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위임·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8.>

제4조의5(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3에 따라 실시한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이를 체육시설의 소유자(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체육시설업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6., 2020. 12. 8.>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가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의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0. 16.>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2024. 01. 12. 현재)

연 번	자치단체명	법 규 명	제 · 개정 일	소관부서	비고
1	경상남도	경상남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02-02	문화체육국 체육지원과	
2	경기도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04-11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08-10	행정국 체육진흥과	
4	충청남도	충청남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10-10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5	경상북도	경상북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4-01-04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